

New procedures to implement tax facilities for government projects financed by foreign grants or loans ^{P1}

해외 기부금 또는 차관으로 자금이 조달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세제 혜택 규정

2024년 10월 18일, 재무부 장관(MoF)은 해외 기부금이나 차관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해 부가가치세(VAT) 및 사치품세(LST), 소득세 혜택 신청 절차 개정 내용이 담긴 PMK-80¹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KMK-239 및 개정안²은 철회되었습니다. 기존 GR-42³ 규정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에 수입 관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지만, 본 규정에는 VAT, LST 및 소득세 혜택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.

PMK-80은 각 이해 당사자 및 역할을 정의하고,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특정 문서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합니다. 본 규정에서는 이해 당사자 및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:

- 기부금/차관 수령자(Grant/Loan Recipient, 즉 정부 부처 및 기관) 및 기부금/차관 최종 수령자(Grant/Loan Forwarding Recipient, 즉 기부금/차관 수령자로부터 기부금/차관을 전달받는 지방 정부)로 이들을 “시행 기관(Implementing Agency)”이라고 통칭함.
- 기부금/차관 제공자(Grant/Loan Provider, 즉 정부에 기부금/차관을 제공하는 외국 당사자/채권자).
- 등록 번호(Registration Number, 즉 외국 기부금/차관 조달 규정에 따라 발행된 기부금/차관 계약을 식별할 수 있는 등록 번호).
- 주 계약자 증명서(Main Contractor Certificate, 즉 주 계약자가 세제 혜택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문서).

¹ MoF Regulation No.80 Year 2024 (“PMK-80”) dated and effective from 18 October 2024

² MoF Decree No.239/KMK.01/1996 (“KMK-239”) as lastly amended by MoF Decree No.486/KMK.04/2000

³ Government Regulation No.42 Year 1995 (“GR-42”) dated 30 November 1995 and effective from 1 April 1995

-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증명서(Taxable Goods/Services Registration Proof, 즉 특정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가 VAT/LST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문서).
- VAT/LST 면제 증명서(Non-Collection Certificate, Surat Keterangan Tidak Dipungut/"SKTD").
- 주 계약자에 대한 소득세 혜택 증명서(Certificate of Income Tax Facility for the Main Contractor).

본 TaxFlash에서는 PMK-80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세제 혜택

주 계약자를 위한 소득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며(즉, 정부가 부담), PMK-80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이 VAT/LST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:

a) 시행 기관은 다음 거래에 대해 VAT/LST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-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취득;
-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(보세 물류 센터(Bonded Logistic Centres)를 통한 수입 포함);
- 관세 구역 외부에서 제공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/무형 자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거래.

b) 주 계약자는 다음 거래에 대해 VAT/LST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-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(보세 물류 센터(Bonded Logistic Centres)를 통한 수입 포함);
- 관세 구역 외부에서 제공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/무형 자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거래.

c) 기부금 제공자는 주 계약자로부터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를 구매할 때 VAT/LST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제 혜택 대상 보조금/차관

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(금전 및/또는 재화/서비스의 형태) 및 차관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:

- 합의서, 계약서, 이와 유사한 문서로 증빙되어야 함.
- 등록 번호(Registration Number)를 발급받아야 함.

주 계약자 증명서(Main Contractor Certificate) 및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증명서(Taxable Goods/Services Registration Proof)

주 계약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, 시행 기관은 각 계약 및 주 계약자별로 주 계약자 통지서(Notification of Main Contractor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주 계약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 계약자 증명서가 발급되면, 시행 기관은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를 국세청(DGT)에 등록하여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해당 등록을 통해 주 계약자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세청(DGT)에 주 계약자 통지서와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신청 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:

- ✓ 등록 번호, 계약/약정 번호, 관련 당사자의 신원, 관련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의 정보가 포함된 양식.
- ✓ 보조금/차관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.

국세청은 제출된 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하며, 요구 사항 충족 시 주 계약자 증명서 또는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 반면, 요구 사항 미충족 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거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.

SKTD (Surat Keterangan Tidak Dipungut)

VAT/LST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 SKTD 서류가 발급되어야 VAT/LST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.

시행 기관 또는 인증된 국내 주 계약자가 본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, SKTD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기부금 제공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SKTD의 경우, 시행 기관이 기부금 제공자를 대신하여 SKT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절차, 필요 정보 및 증빙 문서는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증명서 신청 방법과 유사합니다.

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(PE)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 계약자의 경우, 주 계약자 증명서 및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등록 증명서가 SKTD 서류와 동등하게 간주되며, 별도 SKTD 서류가 없이도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.

SKTD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1월부터 11월까지 SKTD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, SKTD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
- 12월에 SKTD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, SKTD 발급일로부터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

VAT 과세 사업자가 적격한 시행 기관 및 기부금/차관 제공자에게 과세 대상 재화/서비스 제공 시, 각 VAT 인보이스 별로 하나의 SKTD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적격한 시행 기관이나 주 계약자는 재화의 수입 신고서에 SKTD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의 요건

주 계약자가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:

1. 주 계약자에 대한 소득세 혜택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;
2. 세제 혜택이 적용된 소득의 세부내역이 기재된 소득세 혜택 실현 보고서(Income Tax facility realisation report)를 제출하고 이를 연간 소득세 신고서(AITR)에 첨부하여야 함(최종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 계약자의 경우, 월간 소득세 신고서가 소득세 혜택 실현 보고서로 간주).

주 계약자는 소득세 혜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세청(DGT)에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절차, 필요 정보 및 증빙문서는 주 계약자 증명서 신청 방법과 유사합니다. 본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정부 프로젝트의 완료일까지 유효하며, 계약 기간이 수정됨에 따라 증명서의 유효 기간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소득세 혜택 실현 보고서는 상세한 계산 내역을 포함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.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일반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, 다음 회계연도의 11 월 말까지
-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, 월간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후 다음 달 말까지.

본 혜택은 고정 사업장(PE)를 보유한 주 계약자의 세후 이익(Profit after tax, "PAT")이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최종분리과세 대상 주 계약자에 대한 처리

최종분리과세 대상 주 계약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✓ 금전적 보조금/차관의 경우: 주 계약자가 보조금/차관을 받는 과정에서 시행 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나, 해당 원천징수세에 대해 면제 혜택 적용
- ✓ 재화/서비스 형태 보조금의 경우: 주 계약자가 월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직접 납부 및 신고하는 소득세에 대해 면제 혜택 적용

일반과세 대상 주 계약자에 대한 처리

일반과세 대상 주 계약자의 경우, 시행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며, 외환은행 및 관세청은 주 계약자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제 22 조 원천징수세를 면제합니다. 주 계약자가 수입 전에 SKTD 를 취득하거나 수익을 수령하기 전에 소득세 혜택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.

일부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

세제 혜택이 일부 소득에만 적용되는 경우, 주 계약자는 이를 구분하여 장부 기록 및 회계 처리를 해야 하며, 공통 비용은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. 결손금의

경우, 다음 해의 면제 대상 소득과 상계되며,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남아 있는 결손금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소득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.

기타 규정

본 규정과 관련된 절차는 시스템이 마련되는대로 전자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. PMK-80 은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의 교체, 폐지, 취소와 같은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PMK-80 은 2024 년 기준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한 경과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, 이는 2024 년 10 월 18 일 이전에 발생/수령된 일반과세 소득과 2024 년 10 월 18 일 이후에 발생된 최종분리과세 소득에 적용됩니다.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-c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Adrian Hanif
adrian.hanif@pwc.com

Hisni Jesica
hisni.j.jesica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Irene Satyanagara
irene.satyanagara@pwc.com

Sukma Alam
sukma.alam-c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rendro Supriyadi
surendro.supriyadi-c@pwc.com

Angeline
angeline.angeline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de Natawidnyana
made.natawidnyana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-c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-c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vinash Rao
a.rao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Marlina Kamal
marlina.kamal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Nicholas Sugito
nicholas.sugito@pwc.com

William Christopher
william.christopher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Nikolas Handradjid
nikolas.handradjid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Novie Mulyono
novie.mulyono@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Esa Perdana
esa.perdana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www.pwc.com/id

 PwC Indonesia

 @PwC_Indonesia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4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

